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2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이인영 · 김현정
전현희 · 박해철 · 민병덕
황운하 · 김남근 · 조인철
곽상언 · 이정현 · 이해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,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. 또한,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,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(안 제17조제13항)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3항 중 “성명과 연락처”를 “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정치자금영수증) ① ~ ⑫ (생 략)</p> <p>⑬ 후원회는 제34조(회계책임 자의 선임신고 등)제4항에 따 라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 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 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(신용카드·전화 또 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 에 의한 입금을 포함한다)의 <u>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</u>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 다.</p> <p>⑭ (생 략)</p>	<p>제17조(정치자금영수증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</u> <u>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⑭ (현행과 같음)</p>